

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
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교육사회전문위원

□ 다음에는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

○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(2000. 10. 20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지방자치단체이외의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고
-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며
- 일반 재산평가액의 효율을 5%→5%이상으로, 공공용 재산평가액은 2.5%→ 2.5%이상으로, 경작용 재산평가액은 1%→1%이상으로 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자 임대료의 탄력적인 적용을 기하고
- 전세권 조항의 신설과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시 재산평가액의 대부효율을 5%→1%이상으로 인하여

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 지역의 분산효과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에 관한 조례안과
"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
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